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14시 07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	3

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

2014.04.17 조회수 540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86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46조(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(개정 2012. 6. 29)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의 공장(개정 2006. 5. 18, 2007. 11. 23)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(개정 2006. 5. 18, 2007. 11. 23)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개정 2006. 5. 18, 2007. 11. 23)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개정 2006. 5. 18, 2007. 11. 23)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(개정 2006. 5. 18, 2007. 11. 23)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3호의 교정(교도소,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) 및 군사시설(개정 2006. 5. 18, 2007. 11. 23, 2012. 6. 29)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85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87 >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